

지정병원협약서

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와 『민들레의원』은 본 협약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및 양 기관의 편의 증진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본 협약은 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와 『민들레의원』 간에 환자 의뢰, 진료 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약사항

『민들레의원』은 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 직원에 대하여 진료함에 있어 협약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진료과목 : 내과 등 전반적 진료
2. 종합건강검진,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및 5대 암검진, 채용 신체건강검진 등에 대한 검진 및 진료
3. 본원의 복부·갑상선 경동맥 초음파검사, 골밀도 검사, 위·대장내시경검사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
4. 말기 신장질환자를 위한 최첨단 혈액투석기 보유
5. 비급여 진료시 10% 할인비용 적용

제3조 협약기관

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1년(2023.8.22~2024.8.21)간으로 하되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 협약의 해지

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와 『민들레의원』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을 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상호협업 및 해석준용

『민들레의원』은 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 상호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제6조 협약의 효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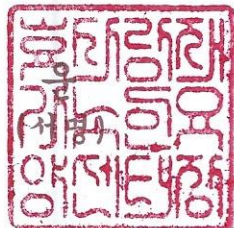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: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『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』와 『민들레의원』은 각각1부씩 보관한다.

협약일 : 2023.8.22

효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

센터장 김 양



민들레내과의원장

전

